

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·검사기관(제17조의4제3항 관련)

1.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·검사기관

-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
- 나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
- 다. 「악취방지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
- 라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·제3호·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·검사를 하는 자

2.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·검사기관

-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
- 나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
- 다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·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·검사를 하는 자